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

미 래 한 강 본 부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미래한강본부

☐ 총 1건 건의

☐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범위 확대 개정	총무부 (운영총괄과)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				
1.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범위 확대 (운영총괄과, '25.2.19.)	□ 현황 ○ 국가하천(한강) 내 불법노점 상행위 및 적치물 증가, 대규모 행사 등에 따른 상시 위험요소 상존 및 타 법령과 비교시 「하천법」은 관리청의 권한 미약 □ 문제점 ○ 한강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노점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점 및 적치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, 노점의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□ 건의내용 ○ ‘반복적·상습적인 무단점용’, ‘통행 및 안전 확보’, ‘이용객의 원활한 이용’ 등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범위 확대 요청 □ 관련 규정 ○ 「하천법」 제73조(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) <table><tr><th>현행</th><th>개선(안)</th></tr><tr><td>하천법 제73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</td><td>제73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td></tr></table>	현행	개선(안)	하천법 제73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	제73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(환경부)
현행	개선(안)					
하천법 제73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	제73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				

건의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	있다. 1. 수해방지 등 긴급한 실시 가 필요한 경우 2. 반복적, 상습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 천을 점용하는 경우 3. 하천 이용·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 가 필요한 경우	